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1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208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2. 6. 원고의 지방세 세액 등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 정관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9조(총회)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30조(정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1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소집)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결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때
4. 중앙회장이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3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제44조(이사회 결의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11.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B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1. 7. 12. 주식회사 C으로부터 ○○



○구 D 대 4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1]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매매대금 합계 7,2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21. 8. 4. 위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2021.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에서 통틀어서 '취득세 등'이라 함)를 감면받고, 2021. 8. 25. 나머지에 해당하는 합계 99,325,000원(취득세 43,500,000원+지방교육세 4,350,000원+농어촌특별세 51,475,0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 담당 직원은 2022. 8.경 이 사건 건물이 공실인 상태로서 그 철거를 위한 비계만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 해체 허가만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부적합하다고 확인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22. 9. 29.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293,150,120원(취득세 268,500,120원+지방교육세 24,6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22. 10. 12. 원고가 2021. 8. 25.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51,475,000원에서 위 2022. 9. 29.자 신고·납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 14,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36,975,000원을 원고에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1. 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세액 합계 293,150,120원을 아래와 같이 감경하는 내용으로 경정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1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액	납부세액
취득세	당초신고	7,250,000,000원	312,000,120원		312,000,120원
	결정 또는 경정신고		43,500,000원	268,500,120원	
	증감액		-268,500,120원		
지방 교육세	당초신고		29,000,000원		29,000,000원
	결정 또는 경정신고		4,350,000원	24,650,000원	
	증감액		-24,650,000원		

사. 피고는 2022. 12.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함).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감면유예기간(1년)까지 공실 상태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해당 부동산을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계속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하거나 장차 고유업무에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워둔 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8820 판결).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아. 원고는 2023. 1.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6. 이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29호증, 갑제30호증, 갑제37호증, 갑제38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절차를 밟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과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가 정한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해당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등 참조).

나.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원고는 2021. 9. 1.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B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원고가 신축을 예정한 건물을 이하에서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이라 함)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B지점 설계·감리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 입찰'이라 함)을 공고하였다.

1. 입찰사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사업개요

- 대지면적 : 450.2㎡
- 건축연면적 : 3,000㎡ 이상(예상)
- 건축 규모 : 미정(건축면적을 고려한 적정 설계에 의함)
- 용도 : 업무시설(금융업소), 근린생활시설

마. 입찰내용 :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바. 용역 기간

- 설계용역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감리용역 : 건축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아. 용역 범위

- 설계용역 : 신축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로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모든 공사를 포함하며, 건축심의 및 허가 업무 진행 및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 등 공사 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포함)
- 감리용역 :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 감리업무 수행(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별도 감리하여야 하는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감리비는 제외)

3. 설계용역 참가 등록 신청 기간

가. 신청 기간 : 2021. 9. 13. 15:00까지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제출처

가. 현장설명회 : 설계용역 참가 등록 신청 시에 진행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1. 11. 1. 15:00까지

다. 제안설명업체 통보 : 2021. 11. 10. 16:00 (3개 업체 선정)



라. 제안설명 일시 : 2021. 11. 26.

5. 낙찰자의 결정

가. 업체별 제안설명회를 거쳐 회사 인지도, 설계계획안 및 발표(PT) 자료, 견적서, 사후관리능력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2021. 11. 30.)

(2) 원고 건축위원회는 2021. 11. 22. 이 사건 설계용역 입찰에 응한 3개 건축사무소('E', 'F', 'G')의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안 설명회에서, 'E'은 연면적 3,028.08㎡, 설계비 240,411,200원(3.3㎡당 262,000원), 감리비 112,864,800원(3.3㎡당 123,000원)을, 'F'은 연면적 2,929.32㎡, 설계비 304,590,000원, 감리비 47,000,000원을, 'G'은 연면적 2,999㎡, 설계비 77,000,000원, 감리비 38,000,000원을 각 제안하였다. 원고 건축위원회는 위 업체들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고 이사회는 2022. 1. 25. 정기총회 부의 안건 승인 등을 결의하였고, 원고의 제49차 정기총회가 2022. 2. 26. 개최되었다.

(4) 원고 건축위원회는 2022. 3. 23. 이 사건 설계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으로서 'G'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 건축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이 사건 건물 철거,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을 위한 본설계와 공사 관리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시기와 채용 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5) 원고는 2022. 4. 12. 'B지점 신축을 위한 철거 및 석면 해체 공사' 입찰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 따른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22. 4. 26.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동일한 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 입찰'이라 함)을 공고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일정

- 2) 현장설명회 : 서류 접수 기한 내 개별방문으로 생략
- 3) 입찰참가신청서류등록 마감 : 2022. 5. 6. 15:00까지
- 4) 가격입찰 및 개찰일시 : 2022. 5. 11. 15:00
- 5) 낙찰자 선정 : 최저가 입찰자(부가세 포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3. 공사범위 및 내용

나. 공사개요 : 건축물 철거(지하층 구조물 포함. 단, 지하층 옹벽 제외), 석면해체 및 제거, 각종폐기물처리등

(6) 원고 건축위원회는 2022. 5. 11. 이 사건 철거공사 입찰에 따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7) 원고는 2022. 5. 20. 이 사건 설계용역 입찰 결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된 'G' 대표자 I와 원고의 B지점으로 사용할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계약금액 77,000,000원에 설계용역계약을, 계약금액 38,000,000원에 감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8) 그런데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H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2. 5. 27. 다시 한 번 이 사건 철거공사 입찰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 따른 응찰 업체가 없어, 원고 건축위원회는 2022. 6. 13. 종전에 선정한 H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다시 결의하였다.

(9) 원고는 2022. 6. 14.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에 관한 소방설비설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원고와 H은 2022. 6. 23. 계약금액 167,200,000원, 공사기간 2022. 6. 27.부터 2022. 9. 21.까지인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라 함).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에 의해 배출되는 폐석면 등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하여 2022. 6. 27.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 등과 지정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2022. 6. 28. 피고의 확인을 받았다.

(12) 원고는 2022. 6. 30. 'M' 대표자 N과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을 위한 소방기계 분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3) 원고는 2022. 7. 4.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에 관한 경관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8. 23. 심의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원고에 통보하였다.

(14) 원고는 2022. 8.경 주식회사 O와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를 위한 감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5) 원고와 H은 2022. 9. 19.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22. 10.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6) 원고는 2022.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17) 원고는 2022. 10. 20.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 공사도급계약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22. 12. 13. 위 입찰 결과 수급인으로 선정된 P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5,078,700,000원, 공사기간 2023. 1. 10.부터 2024. 2. 28.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P 주식회사는 2023.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 신축공사를



2023. 4. 1.부터 착공할 것임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제5호증 내지 갑제27호증, 갑제32호증, 갑제35호증의 각 기재, 갑제2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제31호증, 갑제33호증, 갑제34호증, 갑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21.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21. 9. 1.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 설계를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공사 입찰을 공고를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22. 4. 12.에야 실시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시기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입찰에 따라 H을 선정하고도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22. 5. 11. 다시 한 번 입찰을 공고하였다가, 2022. 6. 13. 결국 H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H의 입찰가가 너무 낮아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철거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점을 그 이유로 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H의 계약 이행 능력을 의심하였을 만한 사정이나 원고가 H에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H은 결국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을 선정하여야 하는 등의 계약을 받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지 약 10개월 후에야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2021. 9. 1. 이 사건 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하고, 2021. 11. 22. 제안 설명회를 가졌음에도 곧바로 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 건축을 위한 예산안에 관하여 2021년 정기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 정기총회 결의를 기다리기 위하여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아도 원고는 2022. 2. 26. 정기총회 개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22. 5. 20.에야 'G' 대표자 I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지 약 9개월 후에야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 건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정관 제33조 제2호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는 원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원고는 2021.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앞선 2021년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결의를 거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을 건축하는 데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관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정관 제31조에 따른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신축 예정 건물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결의를 거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22. 2. 26. 정기총회 개최 시까지 위 건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유보하였던 것 역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라. 소결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천○○

판사 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1

판사 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 ○구 D

[도로명주소] ○○ ○구 Q

위 지상 조표 R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은행

1층 359.31m²

2층 370.12m²

3층 370.12m²

4층 370.12m²

5층 370.12m²

6층 128.60m²

지하 279.57m². 끝.



[별지2]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끝-